■ 국유재산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1.10.14>

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(제77조제2항 관련)

반환의 원인	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	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
1.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	12년 이하	매각가격의 20퍼센트
2.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	10년 이하	매각가격의 30퍼센트
3.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	8년 이하	매각가격의 40퍼센트
4. 항소의 취하, 항소심의 소송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	6년 이하	매각가격의 50퍼센트
5.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	4년 이하	매각가격의 60퍼센트
6. 상고의 취하, 상고심의 소송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	2년 이하	매각가격의 70퍼센트